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
**『제주형 고용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 시행 공고**

『제주형 고용안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 지원

2 기존 수혜자(정부지원금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자)

① 지원대상 및 요건

- '21. 8. 31일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고용노동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1. 5. 1. ~ 8. 3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지원제외대상]

- '21.5.1.~8.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5.1.~8.31.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오 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근로취약계층(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등), 제주형 피해 회복 지원(청년, 문화예술인, 농어가 지원분야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② 지원내용: 80만원

③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본인 확인, 계좌검증(계좌번호 변경 가능) 후 신청
 -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21. 9. 9.)
- 신청기간 : 2021년 9월 9일(목) ~ 9월 29일(수)
 - *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정부지원금 1~4차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자

④ 지원금 지급

- 9. 16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⑤ 유의사항

-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 및 기지원 받았을 경우 환급 조치

- 신청은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 후 지급계좌를 기입하고 신청하는 절차임
 - 정부지원금 4차 중 한 번이라도 수령했음에도 문자메시지 못 받은 경우 신규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타인계좌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070-4186-9310~4)

3 신규 신청자 (정부지원금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지 않은 자)

1 지원대상

- '21. 8. 31일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 5. 1. ~ 8. 31.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21. 5. 1 ~ 8. 31.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복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21. 9. 9.)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주형 고용지원(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② 지원내용: 80만원

③ 지원요건

❖ **(자격요건)**① '21.5.1 ~ 8.31. 기간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 또는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21. 1월 ~ 8월 연소득(연수입)이 3,4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자 ①과 ② 중 하나 선택

① '21. 5월 ~ 8월 중 1회 이상 월 소득 50만원 이상인 자

② '21. 5월 ~ 8월 소득 합계 100만원 이상인 자

▶ 월소득 증빙서류

①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 5 ~ 8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①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와 ㉡ 모두 제출)

㉠ 사실증명서(신고 사실 없음) 제출

㉡ '21. 1월 ~ 8월 통장 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신규 신청자
(특고·프리랜서 중 정부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지원 받지 못한 자)
- 신청기간 : 2021년 9월 24일(금) ~ 10월 15일(금)
 - * 업무시간(09:30 ~ 17:00) 내 방문자에 한하여 당일 신청 접수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제출서류(첨부1 참조) 지참
- 접수처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제주시 수목원길 9) ☎ 070-4186-9310~4
 - (서귀포시) 서귀포고용센터(서귀포시 동홍로 186) ☎ 064-710-4436,4437

5 신청서류 및 서식 : 【첨부1】 및 붙임서식 참조

6 이의신청

- 신청장소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인이 지원 제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지원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만료 시 불인정)
 -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및 우편발송
- 이의신청 건은 신청 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 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7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번 지급되는 제주형 지원금 환수 예정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대상자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70-4186-9310~4) 문의

4

중복수급 및 부당수급

□ 중복수급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근로취약계층(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등), 제주형 피해 회복 지원(청년, 문화예술인, 농어가 지원 분야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제주형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금번 지원금 반납 필요

□ 부당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신청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⑥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 관련 협약서
- ⑦ 오지급 반납 협약서
- ⑧ 통장사본
- ⑨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① '21년 5월 ~ 8월 기간 중 하나의 달을 선택하여 노무를 제공한 소득 50만원 이상과 '21년 5월 ~ 8월 소득의 합계 1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 계약서 또는 위(축)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 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3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①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제출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 홈택스 접속 > 개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클릭 > 사실증명신청

② 2019년, 2020년, 2021. 1월 ~ 8월 중 하나를 선택해 통장 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해당연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첨부2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비고
		코드	종목명	분류	세세분류.내용	
인적 용역 및 과세 자료 제출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	94 인적용역	보험설계사. 중개사	
	골프장캐디	940914	캐디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일부*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	"	대리운전기사	일부
	퀵서비스기사	940918	퀵서비스	"	퀵서비스 배달원	일부
	방문판매원	940908	방판.외판	"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940911	기타모집수당	"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신용카드모집인					
사업자 등록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63 육상운송	택배 서비스	
		641201	택배업	64 육상운송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건설기계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602303 602304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 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630702	화물운송업	63 육상운송	지입(용달.일반.개별)	

첨부3

공공일자리 사업 예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사회공헌지원)	사회봉사복지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공공업무지원형
4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공공업무지원형 / 인턴형
5	농식품부	식품외신산업 인력양성 사업	인턴형
6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인턴형
9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사회봉사복지형
10	복지부	자활사업	소득보조형
11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12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13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인턴형
14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5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소득보조형
16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산림서비스 도우미(정원사 운영)	공공업무지원형
17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9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20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공공업무지원형
21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인턴형
22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23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4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25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	인턴형
26	행안부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	공공업무지원형
		국가기록물 정리(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공공업무지원형
27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인턴형
28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소득보조형
2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소득보조형
30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	소득보조형
31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소득보조형
32	환경부	대기개선대책추진(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공공업무지원형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 제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주형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과세정보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고용보험법」에 관한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 오류 여부 확인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계좌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과세정보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고용보험법」에 관한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 오류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계좌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과세정보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고용보험법」에 관한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 오류 여부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계좌정보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신청인은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 「제주형 고용안정지원 특별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통)
담당 직원 확인사항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p>아래 본인은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모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서식4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 관련 약약서										
<p>① 아래 약약인은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약합니다.</p> <p>② 아래 약약인이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위반행위</th> <th>제재부가금 부과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지원금 수령자</td> <td>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td> <td>500%</td> </tr> <tr> <td>2)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td> <td>100%</td> </tr> <tr> <td>3) 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타 업종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중복 수령한 경우</td> <td>-</td> </tr> </tbody> </table> <p>③ 만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모두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3) 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타 업종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중복 수령한 경우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3) 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타 업종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중복 수령한 경우	-									

서식5	오 지급 시 반납 약약서
<p>아래 본인은 지원받은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 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보조금 수령 후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모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행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의 「제주형 고용안정지원 특별지원금」을 상기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가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제주형 고용안정지원 특별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에게 전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9

위임장 (대리인 신청서)

신청인 (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 (피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사항			
「제주형 고용안정(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신청·수급에 관련된 사항			
본인 신청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위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구비서류 : ① 위임자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

1. 지원대상은?

- 기존 정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자 가운데 '21.8.31.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중 '21.5.1. ~8.3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기존 정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8.31.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중 '21.5.1. ~ 8.31.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2. '21.5.1.~8.31.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1.5.1.~8.31.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다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근로취약계층(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등), 제주형 피해회복 지원(청년, 문화예술인, 농어가 지원분야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불가

4.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자격요건은 ① '19년 연소득(연수입) 또는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② '21.1월 ~ 8월 연소득(연수입)이 3,400만원 이하인 자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되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5.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을 제한함

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7. 1·2·3·4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이번 특고·프리랜서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8.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나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를 말함.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 증빙서류
 -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표기)
 - 외국인 자녀 :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그 주거를 등록한 자

9. 지원금액은?

- 80만원 지원

< 지원요건 관련 >

10.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 ① (자격요건) ① '21.5.1 ~ 8.31. 기간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 또는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21.1월 ~ 8월 연소득(연수입)이 3,4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자 * ①과 ② 중 1개 선택

① '21. 5월 ~ 8월 중 1회 이상 월 소득 50만원 이상인 자

② '21. 5월 ~ 8월 소득 합계 100만원 이상인 자

- ② (소득요건) '21.5.1. ~ 8.31. 기간 중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21.5.1. ~ 8.31. 기간 중 소득합계 100만원 이상인 자

11. '21.5.1. ~ 8.31.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21.5.1. ~ 8.31. 기간 중 한 달이라도 50만원 이상이거나 '21.5.1. ~ 8.31. 기간 중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자 해당

12.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 예를 들어 '21.4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1.5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1.4월 소득이 아닌 '21.5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13.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1년 5~8월의 통장 입금 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제출해야 함
 -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만약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14. '21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 '21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21. 1월 ~ 8월까지 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인 자는 해당되며 비교 대상은 없음
 - 다만, '21. 5월 ~ 8월 기간 중 어느 한달이라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됨

15.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6.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 관련 >

17.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경제정책과)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9월 9일(목) 09:00 ~ 9월 29일(수) 18:00
 - 신청홈페이지 행복드림(<https://happydream.jeu.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9월 24일(금) 09:30 ~ 10월 15일(금) 17:00*
 - * 업무시간(09:30 ~ 17:00) 내 방문자에 한하여 당일 신청 접수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18. 지급 시기는?

- 온라인 신청(기존 정부 지원금수혜자)자 중 대상자인 경우 '21.9.12 일(일)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9월 16일 자 지급 예정
 -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0월 29일자 지급
다,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19.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중복수급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근로취약계층(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등), 제주형 피해 회복 지원(청년, 문화예술인, 농어가 지원분야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제주형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금번 지원금 반납 필요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24.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인이 지원제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지원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초과 시 불인정)
 -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및 우편발송
- 신청장소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 이의신청 건은 신청 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